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업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7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 사용허가 2. 사용료조정 및 징수 3. 주소의 이동신고 4. 시장사용 폐지신고 5. 사용취소 및 정지	시장사용조례 제1조 시장사용조례 제3조 제1호 시장사용조례 제11조 시장사용조례 제12조 시장사용조례 제13조 1항	읍.면장 " " " " " "
8	산림에 관한 다음 의 권한	1. 입산허가 2. 산림이외의 지역에 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 (허가) 반납과 반출 확인용 극인타기 및 생산확인표 작성 3.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 및 치수무육을 위한 벌채신고	산림법 제92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산림법 제90조 1항	" "

【 6 】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양주군 체육진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조성 및 운영
관리에 군민 체육시설 확충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양주군 체육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목표는 5억원 (안 제2조)
- 기금의 운영 관리 (안 제3조)
- 기금의 사용 (안 제4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양주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에 관한 양주군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목표는 5억원으로 한다.(단,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 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조성 기간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으로 하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은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금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등) ① 적립된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 목적년도후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로 정한 다음 사업에 지원한다.

1.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 회장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양주군체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양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조례 제1456호로 제정 93. 11. 1일 시행됨에 따라 열람, 사본, 복사, 청취등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져 함.

주요내용

-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